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87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 안규백·부승찬·박홍배

신영대 · 안태준 · 이성윤

서미화 · 김영환 · 김준혁

오세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해당 접근금지 조치는 현행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미적용 대상자에 대한 청구인바,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등에 100m 이내로 가까이 접근할 경우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조치이행을 확보하게 됨.

그런데 100m는 성인이 단시간에 뛰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 거리로 보기 어려워,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접근금지 거리를 800미터 이내로 상향하여 성범죄 피해아동· 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 조제3호).

법률 제 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호 중 "100미터"를 "800미터"로 한다.

부 칙

제2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1 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청구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보호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처분 기간을 연장하거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제41조(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검사는 성	위한 조치의 청구)
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	
소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위	
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에 제1	
호의 보호관찰과 함께 제2호부	
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	
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해자에게 특정지역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3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	
터 <u>100미터</u> 이내에 가해자	<u>800 ¤] E-]</u>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	
근을 금지하는 조치	
4.・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